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개정(2007.12.21 법률 제8737호) 및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개정(2008.07.09 대통령령 제20911호)에 따라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

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**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(안 제6조)**

■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와 사전협의,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여 지정절차 강화

○ **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(안 제11조·제34조, 별표 2)**

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주와 가로등주를 추가지정 하고 수수료 대상항목에서 제외함

○ **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(안 제18조)**

■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당초 25%이상에서 20%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표출 비율이 같도록 함

○ **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(안 제31조)**

■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시 등록증을 7일이내 반납토록 하고 영업소안에 관련장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○ **광고물 실명제 시행(안 제33조의2)**

■ 광고물의 설치·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·신고번호, 표시기간, 제작자명 등을 스티커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함

○ **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(안 제35조, 별표 5)**

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법에서 상향 조정되어 조례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장부 미비치 및 실명제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항목 신설

○ **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·재정 지원근거(안 제37조)**

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○ **기타 관련조문 정비(안 제20조·제30조)**

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변경조항을 조례 조문에 맞게 정비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행정안전부(지역활성과)에서는 **「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」**의 상위법인 **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**과 **「옥외광고물 등 시행령」이 개정**됨에 따라 2008년 11월에

○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등 8개 주요내용이 포함된 **「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」**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**

○ 우리군 에서도 이 **표준개정안을 근거**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되며,

○ **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